



성 산업과 범죄와의 연관성에 관한 소고

A Brief Essay on a Connection between Sex Industry and Crime

이갑옥¹⁾ 김해대학교 간호학과

Gab Ok Lee Department of Nursing, Gimhae College

초록: 우리나라에서도 근래 성에 관련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와 같은 성 산업의 존재는 범죄의 증가와 같은 이차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청소년이나 아동의 보호를 위해서 미국에서는 지방정부위주로 성 산업의 허용을 특정한 구역으로 규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중앙정부위주로 학교로부터 일정한 거리 이내에서만 규제하고 있다. 규제 방법에 상관없이 성 산업의 이차적인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불법적으로 영업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또 이를 위하여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는 효과적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제정해야 한다.

주요어: 성 산업, 성범죄, 성폭력, 범죄

Abstract: In these days, the number of enterprises which provide sex-related products and services has been increasing in Korea. The presence of sexually oriented businesses has usually resulted in negative consequences such as increased levels of crime. As permissible forms in the context of protecting children and adolescents, a municipality enacts an ordinance regulating the places where the businesses may operate in the USA, while the businesses are not permitted only inside the school zone in Korea. Irrespective of ways of regulating the business, it is absolutely necessary to crack down consistently on the illegal business activities to minimize adverse secondary effects of sexually oriented businesses. Moreover, the central or local government should have enact an effective decree or ordinance to regulate the business.

Key words: Sex Industry, Sexually Oriented Business, Sex Crime, Sexual Aggression, Crime

1) 교신: (우) 621-706 경상남도 김해시 삼안로 112번길 198 김해대학교 간호학과 이갑옥
(goklee@gimhae.ac.kr)

서론

성 산업(sex industry)이란 성에 관련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사업들을 이른다. 여기에는 성매매를 비롯하여 인쇄나 영상 매체 등의 포르노 사업, 성행위 시 이용되는 오락용 기구(sex toy) 및 변태성욕자들이 사용하는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 성인 전용 TV채널이나 극장, 스트립 클럽, 마사지 업소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들이 포함된다(McCleary, 2008; Thomas, 2008). 청소년들의 일부가 그와 같은 제품이나 서비스 이용에 노출되고 있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이희재, 선재순, 2004), 이들은 주로 성인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성인 전용 사업이라고도 부른다.

성 산업의 일부가 청소년들에게 쉽게 노출되고 있는 것도 사회적인 근심거리이지만, 성 산업의 발달로 인하여 파생되는 이차적인 효과는 더 걱정스러운 일이다. 지역사회에서 성 산업이 발달한다는 것은 성욕을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하여 공공연하게 성적 일탈 행위 등을 일삼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하므로 불쾌감을 초래함과 동시에 범죄의 발생이나 증가와도 관련성이 깊다는 점이다. 지난 몇 십 년 동안 성의 상품화가 지역사회에서의 범죄 증가와 관련되는지를 학술적으로 논쟁해왔지만, 대다수 연구들은 범죄 증가를 성 산업의 이차적 효과라고 지적하고 있다(McCord & Tewksbury, 2012). 이차적 효과의 가장 주된 내용은 범죄 증가이지만, 성인 전용 사업들이 특정한 지역에 몰리게 될 경우 성 전파성 질환(sexually transmitted diseases) 발생의 빈도가 상승하며, 주변의 상업 및 주거지역의 가치도 감소하게 되며, 성 산업이 활성화된 지역이나 근처에 거주하는 주민의 삶의 질이 저하되며, 주변의 사업체들도 원하지 않는 업종으로 전환해야 하는 어려움 등이 수반된다(Cooper & Kelly, 2008; Thomas, 2008).

성폭력과 같은 범죄가 발생하는 다양한 요인들 중의 하나는 거주지역과 같은 사회적 환경이다(전희옥, 2009). 다양한 형태의 성인 전용 사업들이 밀집하게 되는 장소는 보통 사회적 분열이

심하거나, 토지를 원래의 용도를 사용하지 않거나, 또는 성산업 지역이 형성되더라도 이에 대해서 반발하기 어려운 사회경제적 지위가 약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 등에 위치하고 있다(Nolan & Salkin, 2006; Pacione, 2005). 그러한 이유로 성 산업이 밀집된 지역은 범죄 발생에 취약한 편이다(Bursik & Grasmick, 1993). 이에 본고에서는 성 산업의 발달과 범죄 증가의 관련성을 비롯하여 범죄의 예방 방안으로서 성 산업을 규제하는 조례 제정의 효과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단 성 산업의 규모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본고에서의 초점은 온라인상의 성 산업보다도 오프라인상의 성 산업에 맞추고자 한다. 역시 국내에서 이루어진 성 산업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성매매에 초점을 맞춘 것이지만(정현미, 2013; 황태정, 변하도, 2013), 본고에서는 성매매 이외의 사업에 더 초점을 맞춘 것이다.

성 산업과 범죄 발생의 관계

성 산업 발달의 이차적 효과

성 산업의 범죄 증가와의 관련성에 대한 공공정책의 관심은 ‘이차적 효과’이며, 그 효과는 성매매, 약물 오남용, 재산 범죄, 개인 범죄 등과 같이 모두 부정적인 것들이다. 즉 성 산업이 개시되면 곧바로 그와 같은 범죄들의 발생 비율이 증가하는 반면, 성 산업을 폐쇄시키면 그 비율이 감소하게 된다(McCleary, 2008; McCleary & Weinstein, 2009). 예를 들면, 성매매를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미국의 네바다 주에서는 범죄 발생이나 증가라는 부정적인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Brents & Hausbeck, 2005). 또 다른 예로 인터넷에서의 포르노 사이트 발달로 인하여 성범죄가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즉 범죄 및 인터넷 이용에 관련된 노르웨이 자료를 분석한 바에 의하면, 포르노 사이트의 이용 증가는 강간이나 다른 성범죄 증가와의 관련성이 높았으며, 또 그와 같은 성범죄는 거의 대부분 남성들, 그 중에서도 젊은 남성들이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Bhuller 등, 2011).

우리나라에서 성 산업의 발달에 따른 범죄발

생의 증가 여부 등을 본격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없지만, 그 관련성을 간접적으로 유추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정보기술의 발달이 1990년대 이후 급속하게 이루어지면서 인간의 성이 상품화되는 속도가 더 빨라짐과 동시에 소위 풍속이나 향락 산업의 규모가 국가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도 점차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들 중의 하나는 바로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유혹하는 성 관련 사이트들이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다는 점과 인터넷이 성매매 등의 청소년 비행을 유발하는 가장 강력한 매체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이희재, 선제순, 2004). 역시 성 산업이 발달하는 상황에서 범죄 발생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그 예로 대검찰청(2013)에서 발표한 범죄 관련 통계를 성범죄에 국한시켜 살펴보면,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의 성폭력 범죄는 2007년 13,634건에서 2008년 15,094건, 2009년 16,156건, 2010년 19,939건, 2011년 22,034건으로 증가했으며, 2012년도에는 전년에 비해 약간 감소한 21,346건이었다. 또 2012년도 성폭력 범죄의 범죄자 전과를 살펴보면, 초범의 비율이 39.1%이었고, 18세 이하 소년범의 비율은 8.7%이었다.

오프라인상의 성 산업과 범죄 발생의 관련성은 더 분명한 편이다. 예를 들면, 미국 켄터키 주의 Louisville시의 성 산업 지역에서의 폭력 범죄, 절도 등 재산 범죄, 공공질서 범죄 비율을 토대로 그 효과를 분석한 결과, 성 산업은 모든 형태의 범죄 증가와 관련성이 매우 높았다. 즉 성 산업지역의 범죄 발생의 빈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편이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면, 성 산업이 밀집한 구역으로부터 500feet 이내에서 발생한 범죄 비율이 전체 지역에 비해 12.3배 그리고 1,000feet 이내에서는 8.3배 정도 높았는데, 특히 절도와 같은 재산 범죄 그리고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범죄들의 비율이 높았다. 모든 종류의 범죄 발생을 합했을 경우에도 적어도 500feet 이내에서는 4배, 1,000feet 이내에서는 3배 정도 높았다(McCord & Tewksbury, 2012). 이는 다른 사회 인구학적 요인들보다 성 산업 지역과의 근접성이 범죄 발생을 결정해주는 강력한 요

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Rengert 등, 2005). 또 성 산업 지역과 근접하더라도 사업 형태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났다. 예를 들면, 모텔 근처에서 발생하는 범죄 비율도 다른 지역보다 높았지만, 성인 전용 서점 근처에서 발생한 범죄 비율은 그보다도 더 높은 편이었다(McCleary & Weinstein, 2009).

성 산업지역에서의 범죄 발생 요건

성인 전용 물품을 판매하는 가게를 찾는 손님들은 전형적으로 자동차를 몰고 와서, 주차를 하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서, 물건을 구입한 후 차를 몰고 떠난다. 이와 같은 일상적인 행위를 보면, 일반 편의점을 찾는 고객들의 일상행위와 거의 구분되지 않는다. 구입한 물건이 성인 용품이라는 것 이외에는 보통 가게들과는 다르지 않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이차적 영향을 논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성인용 서적이거나 비디오와 같은 성인 전용 물품이었을 때에는 이러한 상식적 주장은 설득력이 낮은데, 모든 형태의 성인 전용 사업이 범죄와 의미 있게 연관이 되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범죄 이론에서 범죄가 증가한다는 이차적 효과는 범죄의 일상행위이론²⁾(routine activity theory)의 특별한 사례에 해당된다(DeMichele & Tewksbury, 2004; Douglas & Tewksbury, 2008).

일상행위이론이란 사회구성원들의 일상행위에서의 변화가 범죄율의 변화에 영향을 준다는 이론으로 범죄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인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들은 범죄의 발생에서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적절한 대상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 범죄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거나 보호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나 인력 등(예, 순찰)이 부재하는 것, 그리고 범죄에 대한 예방이나 감독이 부재된 상황에서 동기화된 위반자가 존재하는 것이다. 성 산업이 개시된 지역에서 범죄행위 기회들이 증가한다는 일상행위이론은 그 세 가지 요인들이 시간과 공간적으로 만났을 때 범죄행위가 쉽게 발생한다는 것인데, 그 세 가지 범죄유발요인이 동일한 시간과 공간에 나타나는지의 여부는

2) 일상행위이론을 '일상활동이론'으로 번역하기도 함.

개인의 일상적인 행위의 양상에 달려 있다(Cohen & Felson, 1979).

성 산업이 밀집한 지역에서 그 세 가지 요건들이 어떻게 범죄의 발생 가능성을 높여주는지를 보자. 우선 성 산업 지역에서 가장 분명한 요건은 바로 적절한 목표물의 존재이다. 성 산업의 고객들은 대부분 남성이며, 주로 혼자서 그와 같은 서비스를 찾거나 제품 구입을 하며, 또 술이나 약물 등에 취해 있는 경우가 다반사이다(DeMichele & Tewksbury, 2004). 결국 그들이 범죄의 주 희생자가 되는데, 성 산업의 고객들은 대부분 범죄의 피해자가 되더라도 익명의 상태를 원하고 신분이 드러나기를 꺼린다(Ryder, 2004). 역시 성 산업의 주 고객들이 잠재적인 범죄 희생자로 적격인 이유는 그들의 대다수가 신분의 노출을 피하기 위해서 현금거래를 하면서 비행이나 범죄와 관련된 사업(예, 성매매)에 접근하는 남성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상당수는 범죄 피해자가 되더라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범죄자의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은 완벽한 목표물이 되고 있다(McCleary, 2008).

다음으로 성 산업이 밀집한 지역의 근처에는 동기화된 범죄자들이 있으며, 그들이 있기 때문에 범죄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동기화된 범죄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성 산업의 밀집지역으로 몰리는 이유는 적절한 목표물이 존재하기 때문인데, 범죄자들도 성 산업에 종사한 사람들이나 고객(목표물)들처럼 술이나 약물의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전형적인 모습이다(DeMichele & Tewksbury, 2004; Douglas & Tewksbury, 2008; Erickson & Tewksbury, 2000; Tewksbury, 1990).

마지막으로 성 산업이 이루어지고 지역에는 범죄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는 등 현장 보안이 매우 취약한 편이다. 각 업소마다 입구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들도 보안의 책임을 지고 있지만, 그들은 범죄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지는 행위들에 별다른 간섭이나 순찰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게 된다. 그 이유는 적극적인 행위 자체가 고객들의 상업지역 방문의욕을 꺾는 행위여서 자신들의 사업에 도움이 되지 않

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Forsyth & Deshotels, 1997). 게다가 고객들은 전형적으로 홀로 와서 홀로 떠나므로 신변 안전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 보안이 취약하므로 폭력이나 재산 범죄가 쉽게 발생하며, 고객들이 신분 노출을 꺼려서 멀리 주차를 해두고, 홀로 밤늦게 주차장으로 돌아가야 하는 경우가 흔해서 쉽게 범죄가 발생한다(Donnelly, 1981; Douglas & Tewksbury, 2008; Erickson & Tewksbury, 2000).

앞에서 설명한 성 산업 밀집지역에서의 범죄 발생 증가와 같은 이차적 효과를 일상행위이론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즉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체들의 밀집 장소에서의 일상적인 행위는 우범자들의 입장에서 범죄 피해자를 유혹하기에 적합하게 해주는데, 수많은 우범자들은 이 지역에서 자유롭게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가 비교적 유혹적인 장소를 발견하면 희생자가 걸려들도록 기다리다가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우범자에게 더 매력적인 장소는 경찰들의 순찰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면서 표적이 되는 대상자들이 많은 곳이다. 성인 사업지역을 자주 찾은 범죄자들은 적법한 생계수단도 없어서 비합법적인 행위에 대부분의 시간을 투자하면서 살아가고 있다(McCleary & Weinstein, 2009).

성 산업 발달의 규제

우리나라의 경우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 산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이를 규제하는 것도 아니다. 겨우 성매매 방지를 위한 법률(성매매특별법³⁾)이 시행되고 있지만, 문제의 예방이나 방지보다도 사후에 처리하는 수준에 머문 상태에서 시행되고 있을 뿐이다. 일부 문화권에서는 사업 종류에 상관없이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 산업의 이차적 효과는 유사하다고 여기면서 적극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도 하는데, 그 대표적인 문화권이 미국이다

3)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성매매특별법으로 부르고 있음.

(McCleary & Weinstein, 2009).

성 산업을 성공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으로 두 가지 형태를 생각해볼 수 있는데, 하나는 성 산업을 허용해주는 구역을 보통 교회나 학교, 아동시설 등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고서 설정해주는 것(zoning)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사업 운영자에게 각종 범죄 등과 연루되지 않는 조건 등을 달아서 허가를 내주는 것(licensing)으로 규정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하거나 허가 취소를 할 수 있다(Thomas, 2008). 우리나라에서 구역을 설정하여 규제하는 것은 학교보건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우리나라 학교보건법을 보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가 명시되어 있는데, 그 시행령⁴⁾ 제3조에 정화구역을 학교출입문으로부터 50m 이내인 절대정화구역과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인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구역 설정을 통한 규제의 미국 사례

정부가 구역을 정해주고 허가를 내주면서 성인 전용 사업을 엄격히 규제할 수 있는가? 그와 같은 규제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범죄와 같은 이차적인 영향이 성 산업하고의 관련성이 높음을 보여줘야 하지만, 현재 미국의 경우 그 관련성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성 산업의 이차적인 부정적 영향을 규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McCord & Tewksbury, 2012). 즉 성 산업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해서 정부나 지방정부는 성 산업의 유해한 이차적 효과를 입증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지방 정부는 수많은 연구들이 이차적 효과를 보여주었다고 가정해버리는 편이다. 그와 같은 규제를 해온 배경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McCleary & Weinstein, 2009).

Boston시에서는 1960년대 말 도시계획 관계자들의 제안에 따라서 성인 전용 사업을 할 수 있는 장소, 즉 환락가를 단일지역으로 지정하였다. 관계자들이 그와 같이 제안했던 배경은 도시의 다른 지역들에서라도 타락 행위와 같은 성 산업과 관계되는 사업체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할 수

있으며 또 경찰 단속도 그 지역에만 집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범죄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나지 않았던 1970년대 초반 그와 같은 구역을 지정했던 실험이 실패로 드러났다.

이 무렵 Detroit시에서도 사회과학자들과 부동산 전문가들에게 성인 전용 사업체들이 서로 가깝게 몰려 있는 경우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서로 떨어져 있는 경우 중에서 어느 것이 더 나은지를 물었으며, 전문가들은 서로 분산을 시켜두어야 이차적인 영향을 더 완화시킬 것이라는 의견을 모았다.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서 시에서는 사업체들의 업소 사이의 최소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조례를 1976년 제정하여 일부 사업체들에게 일정한 거리를 두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라고 명했는데, 몇몇 사업체들은 시에서 제정한 조례의 합헌성에 도전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1976년도의 조례가 이차적 영향의 증거를 기반으로 했다는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제정되었다고 유해한 이차적 영향을 완화시킬 목적으로 제정되었기에 적절하다면서 도시의 정책을 옹호해주었다.

Detroit시와 유사하게 Washington주 Seattle근처의 중소도시 Renton에서도 1980년대 초반 구역을 지정하는 조례를 제정하였다. 당시 Renton시에서는 성인 전용 사업체가 없어서 그 도시에서의 이차적 영향을 연구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그러한 이유로 Seattle의 연구 결과를 참조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 조례가 제정된 지 1년이 지났을 때 금지된 지역에서 두 극장이 성인용 영화를 상영하면서 제재를 받아 법적 소송을 냈는데, 1986년 대법원은 이차적 영향을 완화시킬 목적을 지닌 조례의 정당성을 강조한 판결을 내렸다. 아울러 법원은 해당 도시에서 그와 같은 이차적 영향을 밝힌 연구를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도시에서 그 효과의 증거를 찾았다면 조례 제정이 정당함을 분명히 밝혀주었다.

보다 최근인 2002년에는 LA(Los Angeles)시에서의 사례가 대법원에서 다시 다루어졌다. 이미 LA시에서는 1977년 이차적 영향에 대한 연구를 광범위하게 시도했으며, 성인 사업체들의 밀집이 주변의 높은 범죄율과 연관됨을 보여주었다. 이런

4) [시행 2014.3.18] [대통령령 제25255호, 2014.3.18., 일부 개정]

결과에 의거하여 LA시는 성인 사업체들이 최소 거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영업해야 한다는 조례를 제정했으며, 그 조례는 1983년 서로 형태가 다른 2개 이상의 사업체가 하나로 합병하더라도 최소 거리 유지에 관련된 조례의 조항을 피해가지 못하도록 수정하였다. 그러나 1995년도에 합병했던 두 사업체가 수정 조례에 이의를 제기했는데, 1977년도의 연구에서는 여러 사업체들이 합병했을 경우에 대한 이차적 효과를 언급하지 않았으면서 그 사업체들은 LA시가 합병 사업의 이차적 효과의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지방법원(순회재판소)은 사업체들의 주장에 동의하는 판결을 해주었지만, 2002년 대법원에서는 수정 조례의 정당성을 인정해주었다.

그 이후에도 성 산업에 대한 규제에 의한 법정 소송이 지속되고 있는데, Iowa주의 Sioux City에서의 Dr. John's라는 사업체의 사례가 있다. 그곳에서는 2개의 성인 사업체가 장기간 구 시가지에서 사고 없이 영업을 해오고 있었는데, 나중에 세 번째 성인 사업체인 Dr. John's가 개업을 했다. 기존의 두 사업체와는 달리 Dr. John's는 외형이 야하지 않아서 성인 전용 사업체처럼 보이지 않았으며, 주변에 부정적인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처럼 보였다. 성인용 사업에 관한 광고도 전혀 하고 있지 않아서 마치 상류층을 위한 여성용 의류나 장신구를 도매하는 일반 상점처럼 보였다. 그러나 영업을 금지구역에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에서는 구역에 관한 법령을 집행했으며, 이에 Dr. John's는 성인 전용 사업이 범죄와 관련된다는 전형적인 이차적인 효과가 없다면서 소송을 제기하였다. 시에서는 2002년에서 2005년 사이에 그 가게로부터 주변 150m 이내에서 발생한 사건 기록을 조사한 후 가게가 개업하기 전과 개업 이후의 기록 비교했는데, 가게 주변에서 발생한 범죄 건수가 증가했던 것을 토대로 가게로 인하여 주변의 범죄 위험이 있다는 의견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업체는 그와 같은 결정에 반발하기도 했는데, 그 이유는 모텔들이 몰려 있는 통제구역에서의 범죄율이 Dr. John's 지역보다도 거의 2.5배 수준이었기 때문이었다. Dr. John's와 같은 성인 사업이 개업한 후 경찰의 감시가 늘어나고,

그러면서 잠재적 사건의 발견 및 기록 가능성도 늘어났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성 산업 규제의 조례 제정

성 산업의 이차적인 효과를 논하거나 지역사회에서 범죄 발생을 예방 또는 통제하고자 할 때 범죄행위를 촉진시키거나 억제시키는 것과 관련된 사회 구조적 조건들을 살펴보아야 한다(McCord & Tewksbury, 2012). 전장에 소개한 사례들에서 본 바처럼 미국의 경우 중앙정부가 성 산업을 규제하는 시도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 금지를 시키기 위해서는 성인 전용 사업들이 미국 헌법 수정 조항 제1조(First Amendment)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외설행위의 범주에 전적으로 해당된다는 재판부의 판결을 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다수 시군단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간이나 장소 등을 제한하는 조례를 토대로 그와 같은 성 산업들을 규제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제들도 일상적으로 성 산업에 의해 초래되고 있는 범죄나 간통 등과 같은 이차적인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시키는 정당한 시도라는 타당성을 인정받고 있다. 일부 조례들은 성 산업을 규제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지만, 조례의 안들을 신중하게 제정해야 나중에 성 산업 종사업자들부터 제기될 수 있는 모든 소송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Thomas, 2009).

이에 성 산업을 규제하려는 조례나 법령을 제정하거나 평가할 때에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야 나중에 법정 시비에 휘말리지 않거나 이차적인 효과를 예방하는 효과가 뛰어나게 된다(Thomas, 2008). 그 사항들은 1) 실제로 정부 차원에서 규제하려는 목적 등에 적합하도록 제정되어야 하는 것, 2)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지를 고려할 것, 3) 정부의 규제 정책을 널리 알려주는 목적을 지닐 것, 4) 구역이나 거리 제한 등을 토대로 성 산업을 규제할 때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해줄 것, 5) 사전 억제의 형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절차가 포함되지 않을 것, 6) 너무 방대하다고 해석될 수 있는 정의나 규제들이 들어있지 않을 것, 7) 애매하게 해석될 수

있는 조항들이 들어있지 않을 것, 8)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내용이 정부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 9) 합리적인 심의 절차에 의해서 제정할 것 등이다.

맺음 말

성폭력과 같은 범죄 발생에 대한 대처에서 사후처리나 위기개입 등은 피해자 보호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사전에 예방하는 일이며, 그 예방에서도 피해 방지 차원보다도 가해 방지 차원의 노력이 더 중요하다. 그와 같은 가해 방지 차원의 방안들 중의 하나는 사회정책 측면에서 퇴폐적인 향락산업에 대한 규제를 하는 일이다(윤가현, 2006; 전희옥, 2009).

우리나라는 1967년 학교보건법을 제정할 당시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술했듯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하 '정화구역'으로 표기함)이라는 구역 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정화구역 이내에서는 호텔이나 여관, 여인숙 시설 등을 비롯한 유해시설의 영업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그와 같은 규제의 이유는 비교적 분명한 편이다. 예를 들면, 정화구역 이내에 유해업소가 많을수록 해당 지역 학교 학생들의 폭력이나 학교 부적응 문제가 더 심각한 것으로 드러난다(정동욱 등, 2014). 물론 유해업종에 해당된다고 명시된 시설이더라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인정을 받을 경우 정화구역 이내에서의 시설은 허용될 수 있으며, 정화구역이 아닐 경우 학교보건법에서 명시한 유해업소들의 영업을 가능하다.

그러나 학교보건법에 의한 규제와 무관하게 우리나라의 실상은 정화구역 이내의 유해시설이 즐비하다. 예를 들면, 2014년 3월 3일부터 31일 사이에 학교주변 유해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1127건이 불법으로 적발되었으며, 그 중 새로운 변종업소가 413건이었다(뉴시스, 2014. 4. 7.). 규제에도 불구하고 정화구역 이내에서의 불법적인 영업행위가 성행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단속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간헐적으로 이

루어지기 때문이며, 단속에 의해 제재를 받더라도 나중에 새로운 형태로 변모시킨 후 다시 불법적인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정화구역이 아니더라도 학교와 매우 가까운 또는 학생들이 매일 등하교를 하는 길목의 상업지역에는 성인용품 판매점을 비롯하여 유사 성매매를 하는 유흥업소, 향락업소들이 즐비하다. 우리나라는 현재 성 산업을 허용하는 구역이 따로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며, 이에 불법적으로 성매매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업소들이 정화구역 이내 뿐만 아니라 상업지역에도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단속을 해도 영업정지의 제재가 끝나면 다시 영업을 재개하는데, 단속이나 행정규제가 사업자들의 입장에서 느슨하기 때문에 성매매를 제대로 막지 못하고 있다. 도심 한복판에서 변종 성매매 업소에 성인은 물론 청소년까지 끌어들이는 실정이며, 상업지역에서의 단속을 피해 유사 성매매 업소를 주택가에서 운영하다 적발될 정도이다. 불법적인 성매매 광고물로부터 사업장에 이르기까지 현재보다 더 강력한 단속을 위한 법률이나 행정 조항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경상일보, 2014. 5. 12.; 영남일보, 2014. 5. 10).

우리나라는 2014년 3월 경제성장에 대한 특단의 개혁조치로서 규제개혁을 통하여 기업환경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무렵 학교 주변의 호텔 건립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시도가 있었다. 기존의 규제들도 좀 더 강화시켜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관광진흥법 개정 등으로 학교 주변의 환경에 관한 규제를 약화시키려는 시도였다. 그동안 경제성장이나 외국인 관광객 숙박시설 부족을 해결한다는 미명하에 숙박업소 설립이 허용되었던 것이 허다했다. 실제로 2013년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심의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거나 영업 자체가 금지된 유해업소를 불법으로 운영하다가 적발된 건수가 334건에 달했다(뉴스천지, 2014. 4. 16.).

물론 그와 같은 규제가 있더라도 정화구역이 아닐 경우 특별한 규제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성 산업지역이라고 부를 수 있는 도심지역이 생겨나기가 쉽다. 도시에서 성 산업지

역의 출현은 단순히 성폭력과 같은 범죄하고만 관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의 폭력이나 절도, 사회질서 파괴 등의 범죄 증가와도 관련성이 매우 크다(McCord & Tewksbury, 2012). 만약 성 산업을 구역을 정해서 허가해줄 경우라도 그 지역의 순찰을 더 강화할 수 있는 조건이 전제되어야 그로 인한 이차적인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다. 즉 동기화된 가해자를 감소시켜주고, 그들의 범죄 대상 희생자도 감소시켜줄 수 있는 상황에서 허가나 규제 완화가 논의되어야 한다(McCord & Tewksbury, 2012). 더구나 인터넷상의 포르노사이트의 출현 등은 규제하기가 더 어렵다. 그와 같은 성 산업은 단순히 성인전용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여기에 접속하는 자들의 상당수는 10대 초중반에 해당되는 청소년들이다(Thomas, 2008).

미국에서는 기존의 법안들이 성 산업들로 인하여 야기되는 이차적 악 영향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정부가 해당 지역사회에서 실시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 조례 제정 등을 토대로 규제하고 있으며, 대법원에서도 그와 같은 조례 제정의 취지를 전적으로 이해해주고 있다(Thomas, 2008). 우리나라도 성 산업의 발달로 인한 이차적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중앙정부가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지방정부라도 조례 제정 등으로 보조를 맞추어나가야 하며, 또 이로 인한 법적 소송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법원도 여기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경상일보 (2014. 05. 12.). *오피니언 사실: 불법 성매매 업소, 진정 뿌리 뽑을 길 없다.*
- 뉴스천지 (2014. 04. 16.). *르포: 모텔 유흥업소에 포위된 학교.*
- 뉴시스 (2014. 04. 07.). *학교 주변 유흥업소, 한 달 새 유흥 단란주점 등 1127건 단속.*
- 대검찰청 (2013). *2013 범죄분석* (발간등록번호 11-1280000-000004-10). 서울: 대검찰청.
- 영남일보 (2014. 05. 10.) “*우리 옆집에서 성매매라니*” ‘유사 성매매업소’ 주택가 침투.
- 이희재, 선재순 (2004).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성의 상품화에 대한 윤리적 고찰. *대동철학*, 25, 1-23.
- 윤가현 (2006). *성 문화와 심리*. 서울: 학지사.
- 전희옥 (2009). 사회과 성폭력 문제 대응 교육 교수-학습 방법 탐색. *사회교육연구*, 16, 81-96.
- 정동욱, 김영식, 양민석, 이성은 (2014).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내 유해 환경과 단위 학교의 학교 폭력 및 학업 중단간의 관계 분석. *교육정책학연구*, 21, 51-75.
- 정현미 (2013). 성매매방지정책의 검토와 성매매 처벌법의 개정방향.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논집*, 18 (2), 211-228.
- 황태정, 변하도 (2013). 성교행위 외 성매매의 법적 규제와 문제점. *형사정책연구*, 24 (4), 193-232.
- Bhuller, T., Havnes, T., Leuven, E., & Mogstad, M. (2011). *Broadband internet: An information superhighway to sex crime?* Bonn, Germany: IZA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bor). [IZA Discussion Paper Series No. 5675]
- Brents, B., & Hausbeck, K. (2005). Violence and legalized brothel prostitution in Nevada.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0 (3), 270-295.
- Bursik, R. J., & Grasmick, H. G. (1993). *Neighborhoods and crime: The dimensions of effective community control*. New York, New York: Lexington Books.
- Cohen, L., & Felson, M. (1979). Social change and crime rate trends: A routine activity approach.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4, 588-608.
- Cooper, C. B., & Kelly, E. D. (2008). *Survey of appraisers: Secondary effects of sexually oriented businesses on market values. Report submitted to the Texas City Attorneys Association*. Austin, Texas: Duncan

- Associates.
- DeMichele, M., & Tewksbury, R. (2004). Sociological explorations in site-specific social control: The role of the strip club bouncer. *Deviant Behavior, 25*, 537-558.
- Donnelly, P. (1981). Running the gauntlet: The moral order of pornographic movie theaters. *Urban Life, 10*, 239-264.
- Douglas, B., & Tewksbury, R. (2008). Theaters and sex: An examination of anonymous sexual encounters in an erotic oasis. *Deviant Behavior, 29*, 1-17.
- Erickson, D. J., & Tewksbury, R. (2000). The "gentlemen" in the club: A typology of strip club patrons. *Deviant Behavior, 21*, 271-293.
- Forsyth, C. J., & Deshotels, T. H. (1997). The occupational milieu of the nude dancer. *Deviant Behavior, 18*, 125-142.
- McCleary, R. (2008). Rural hot spots: The case of adult businesses. *Criminal Justice Policy Review, 19*, 153-163.
- McCleary, R., & Weinstein, A. C. (2009). Do "off-site" adult businesses have secondary effects? Legal doctrine, social theory, and empirical evidence. *Law & Policy, 31*, 217-235.
- McCord, E., & Tewksbury, R. (2012). Does the presence of sexually oriented businesses relate to increased levels of crime? An examination using spatial analyses. *Crime & Delinquency, 59*, 1108-1125.
- Nolan, J., & Salkin, P. (2006). *Land use*. St. Paul, Minnesota: Thompson/West.
- Pacione, M. (2005). *Urban geography: A global perspective*. New York, New York: Routledge.
- Rengert, G., Ratcliffe, J. H., & Chakravorty, S. (2005). *Policing illegal drug markets: Geographic approaches to crime reduction*. Monsey, New York: Criminal Justice Press.
- Ryder, A. (2004). The changing nature of adult entertainment districts: Between a rock and a hard place or going from strength to strength? *Urban Studies, 41*, 1659-1686.
- Tewksbury, R. (1990). Patrons of porn. *Deviant Behavior, 11*, 259-271.
- Thomas, D. A. (2008). Tips for successfully regulating sexually oriented businesses. *Probate & Property, 22*, 43-46.